

# 행 정 자 치 부

## 시 정 요 구

제 목 폐마을상수도 내 공유재산(관리사택 등) 관리 소홀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함안군

내 용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4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또한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49조 및 「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7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상태, 사용·대부료 수납여부,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,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, 원상변경 여부,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1조,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고,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함안군 ○○○○사업소는 군북면 월촌리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라 2005년경 마을상수도시설<sup>67)</sup>을 용도폐지 하고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하

지 않은 채 현재까지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다.

따라서, ○○○○사업소장은 소관 공유재산인 폐마을상수도에 대해 매년 무단 점·사용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그러나,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재 폐마을상수도 내 관리사택(84.69㎡)은 2006년부터 인근 사찰에서 무단으로 사용 중이고 마을상수도 시설물인 착수정, 급속여과지, 활성탄여과지는 대형 공작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폐쇄나 철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상 위험한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.



【관리사택】



【시설물】

이로인해,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 사후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형 시설물이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## 조치할 사항          함안군수는

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위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공작물은 철거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

67) 토지현황 : ○○면 ○○리 산000-0, 산000-0, 산000-0, 0000 4필지 3,097㎡

시 설 물 : 관리사택 1동, 약품투입실 1동, 양수시설 1동, 착수정 1식, 급속여과지 1식, 활성탄여과지 1식